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대외무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되지 않은 품목·기술에 대해서도 이를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능이 한정된 전략물자관리원이 여타 민감 품목·기술의 통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역할을 강화하며,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20319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전략물자의 지정 범위,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 지정 근거 추가(안 제32조제8호)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전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를 전략물자 지정 근거로 추가함.

나.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추가(안 제46조)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에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을 추가하고, 법 제 5조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정보제공 기능은 종전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시행령으로 이관하고자 함.

다.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4)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의 사후관리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되거나 과태료 부과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각 과태료 처분 사유별 위반의 횟수에 따른 부과 금액 기준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5. ~ 8. 15.) 예정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의2”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호에서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전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로, “제조·개발 또는 사용”을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로 한다.

제3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의2”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

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제36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및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나 상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5항”을 “법 제19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19조제3항제13호”를 각각 “법 제19조의3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

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에 따른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한다.

제40조제1항 중 “법 제22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19조의4”로, “자”를 “바”로, “자”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용되거나”를 “이용 또는 전용되거나 이용 또는”으로, “환적하려는 자”를 “환적하려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19조의4”로, “통보받은 자”를 “통보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19조의4”로 한다.

제40조의3을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을 “법 제19조의5”로 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을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로, “때를 말한다”를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9조제1항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를 “법 제19조의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속하는”으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의2”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19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의5”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을 “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의2”로, “법 제19조제2항에”를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중 “법 제25조제1항”을 각각 “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통제 업무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을 “수출입관리 업무를 위한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수출통제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를 “수출입관리 업무를 자율적으로 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 중 “법 제19조제2항”을 각각 “법 제19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3조제4항”을 “법 제22조의2제1항”으로, “수출통제업무의 자율적인 관리”를 “자율적 수출입관리 업무의”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법 제25조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2. 법 제5조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정보제공
3.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급 조정 및 취소 등 지원
4. 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5. 무역안보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방위사업법」”을 “「군수품관리법」”으로, “방위산업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입통제”를 “군수품의 수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등(원자력 전용 품목)”을 “전략물자등(원자력전용품목 및 군용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등 중 원자력 전용 품목”을 “원자력전용품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관과정 중 전략물자등 불법수출입”을 “무허가수출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8. 방사청: 전략물자등 중 군용품목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9. 정보수사기관: 전략물자등 관련 국내외 정보협력, 국가안보에 영향

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무허가수출입에 관한 사항

제48조제2항 중 “법 제29조”를 “법 제25조”로,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제조, 개발, 사용”을 “제조·개발·사용”으로, “전용될”을 “이용 또는 전용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관정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2항제1의 2호	500	700	1,000

별표 4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및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9조 제2항제1의 3호	500	700	1,000

별표 4 제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	1,000	1,500	2,000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제1항제3의 2호			
------------------------------------	-----------	--	--	--

별표 4 제2호아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4호	1,000	1,500	2,000

별표 4 제2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 제2항제1호	500	700	1,0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제18조(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거나 최장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u>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의 유효기간만 해당한다</u>)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수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 ----- ----- ----- ----- ----- ----- -----(<u>법 제19조의2</u>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u>국제수출통제체제</u>) <u>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u>	제32조(<u>국제수출통제체제등</u>) <u>법 제19조</u> ----- ---- <u>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u>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

1. ~ 3. (생략)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제32조의3(기술이전)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8. 제1호에서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

--- 국제수출통제체제등-----
-----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제32조의3(기술이전) 법 제19조의2 -----

제32조의2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제33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나 상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제36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및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34조(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
에 사용될 것

2. 해당 물품등의 수출이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와 최
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
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물
품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하 같다)하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나 상황허가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35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 법 제19조제5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
 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를 면제하되,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수출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법 제1
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
 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
 에 대하여 판정을 받으려는 자
 는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전략물자 또는 법 제
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
 허가 대상인 물품등의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

제35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 법 제19조의6
제3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①법 제20조-----
 ----- 법 제19
조의3제13호-----

 -----.

1. · 2. (현행과 같음)

3. ----- 법 제1
9조의3제13호-----

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신
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
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
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
술 심사나 다른 관계 행정기관
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
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
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
물자 수출입통제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로
판정된 물품등에 대하여 그 명
칭, 규격, 통제번호 등 해당 물
품등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항에 관
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

--

②-----

법 제19조의3제13호-----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소
관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
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
는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에 따
른 판정 및 통보 업무를 「원자
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
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다.

<신 설>

제40조(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의 발급 등) ①법 제22조에 따
라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
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자 및 사
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① ----- 법
제20조제1항 -----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제
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
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에 따른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장에게 위탁한다.

제40조(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의 발급 등) ①법 제27조-----

등 전략물자의 수입 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0조의2(전략물자등의 경우 또는 환적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되거나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경유하거나 환적하려는 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우 또는 환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전략물자등의 경우 또는 환적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4-----
----- 바-----
----- 경우를 -----
--.

1. -----

-- 이용 또는 전용되거나 이
용 또는 -----

----- 환적하려는 경
우

2. -----
----- 법
제19조의4-----

것으로 통보받은 자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40조의3(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 법 제23조제4항에서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전략물자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전략물자등의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 통보받은 경우

② 법 제19조의4-----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있고 그 전략물자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41조(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 신
청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
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려는 자
는 전략물자등 중개허가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41조의2(전략물자등의 중개허
가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
서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

제41조(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 신
청 등) ①법 제19조의5-----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전략물자등의 중개허
가의 면제) 법 제19조의6제3항
에 따라 -----

----- 경우에는 중개허가
를 면제한다.

1. 법 제19조의 국제수출통제체
제에 속하는 -----

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2. (생략)

제42조(중개허가의 기준) 법 제24

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
에 사용될 것

2. 해당 물품등의 중개가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물품등의 수출자, 수입
자,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물품등의 사용 용도를 신
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42조의2(수출허가 등의 유효기
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2조의2(수출허가 등의 유효기
간) ① -----

-----.

1. 법 제19조의2-----

허가	--
2. <u>법 제19조제3항</u> 에 따른 상황 허가	2. <u>법 제19조의3</u> -----
3. <u>법 제23조제3항</u> 에 따른 경우 또는 환적 허가	-- 3. <u>법 제19조의4</u> ----- -----
4. <u>법 제24조</u> 에 따른 중개허가	4. <u>법 제19조의5</u>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 ----- ----- ----- --.
1. <u>법 제19조제2항</u> 에 따른 전략물자 중 <u>법 제19조제1항</u> 에 따른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1. <u>법 제19조</u> ----- ----- <u>기술</u> ----- -----
2. <u>법 제25조제2항</u> 에 따른 자율 준수무역거래자(<u>법 제19조제2항</u>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7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u>법 제19조제2항</u> 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는 경우	2. <u>법 제22조제2항</u> ----- -----(<u>법 제19조의2</u> ----- ----- ----- ----- ----- ----- ----- -- <u>법 제19조의2</u> 에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제4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1. ~ 7. (생 략)

②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1. ~ 3. (생 략)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자율적인 수출통제 업무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 및 조직도

3.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2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

-----.

1. ~ 7.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1항-----

-----.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2조제1항-----

-----.

1. (현행과 같음)

2. ----- 수출입관리 업무를 위한 규정 -----
--

3. (현행과 같음)

<삭 제>

항에 따른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4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출통제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최종사용자에 관한 관리 업무

1의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한 관리 업무

2.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제4항의 등급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출통제업무의 자율적인 관리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

⑤·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①법 제22조제2항-----

--- 다음 -----

----- 수출입관리 업무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

1. 법 제19조의2-----

1의2. 법 제19조의2-----

2.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22조의2제1항-----
--- 자율적 수출입관리 업무의 -----.

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법 제22조제3항-----

의 사항별로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이나 실적을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46조(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

법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
한다.

1.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업
무

2.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
된 국제협력 지원 업무

2의2. 법 제25조에 따른 전략물
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
정 및 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

3.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
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3
0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
입통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

1. 2. (현행과 같음)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법 제25조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
한다.

1.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2. 법 제5조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정보
제공

3.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
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
정, 등급 조정 및 취소 등 지
원

4. 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5. 무역안보에 관하여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
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
6조제1항-----

사항별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한다.

1. ~ 3. (생략)

4. 국방부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등(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6. 원자력안전위원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등 중 원자력 전용 품목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 관세청: 전략물자등 통관 및 통관과정 중 전략물자등 불법수출입에 관한 사항

8. 정보수사기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말한다): 국내외 전략물자등 관련 정보협력, 국가안보에 영향

-----.

1. ~ 3. (현행과 같음)

4. ----- 「군수품관리법」 --
-- 군수품의 수출-----

5. ----- 전략물자등(원자력전용품목 및 군용품목--

6. ----- 원자력전용품목-----

7. -----
무허가수출입-----

8. 방사청: 전략물자등 중 군용품목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

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불법수출입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 ④ (생 략)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
다.

1. ~ 5. (생 략)

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
한 교육)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
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원
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
국원자력통제기술원,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9조(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
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

항

9. 정보수사기관: 전략물자등 관
련 국내외 정보협력, 국가안보
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무허가수출입에 관한
사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6조제3항-----

--.

1. ~ 5. (현행과 같음)

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
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25조-
----- 무역안보관리원-----

-----.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
성 및 운영)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 등의 <u>제조, 개발, 사용</u>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u>전용될</u>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u>국제수출통제체제</u>의 통제대상 물품등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 (생략) ② (생략)	----- ----- ----- -----. 1. ----- -- <u>제조·개발·사용</u> ----- ----- <u>이용 또는 전용될</u> ----- 2. <u>국제수출통제체제등</u>----- -----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4836